

의안번호	2201966
의 퇴 인	강유정의원
회 답 일	2024. 8. 20.
추계번호	24C2199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2(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)	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‘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’에서(모두 비상임) ‘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’(2명 상임)으로 확대함	의무규정
2	안 제29조의4(조정부)	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9조의2(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9조의4(조정부)	

2. 상세사유

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(안 제29조의2)

-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

구성하며, 2명은 상임으로 함

- 현행 “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”(모두 비상임)에서 “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”(2명 상임)으로 확대함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우선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, 위원 정수 증가 및 위원회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회의횟수가 증가하여 회의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그 증가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- 참고로 문체부 문의 결과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는 인당 연간 1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¹⁾

□ 조정부 설치(안 제29조의4)

-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함
-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조정부를 설치할 경우, 사업내용과 업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회의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해당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
□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참고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1인당 기본연봉이 1억 2,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됨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